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380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9.

발 의 자 : 강선영・서명옥・최수진
김용태・임종득・최은석
구자근・유용원・이달희
김위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,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 및 재임용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(兵力)을 줄이거나 복원(復員)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,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

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 및 제4항)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3호 중 “병력(兵力)을 줄이거나 복원(復員)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”를 “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(兵力)을 줄이거나 복원(復員)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3. 병력(兵力)을 줄이거나 복원(復員)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 <신 설>	제37조(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) ①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(兵力)을 줄이거나 복원(復員)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서-----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고용 및 생활 안정

	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